

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미화 교육청소년과장)

가. 개정사유

○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13조)

○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13조의2)

○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운영 방식 변경(안 제15조)

○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의 위원 해제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16조)

○ 준용 규정 신설(안 제25조의2)

○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른 띄어쓰기 및 맞춤법·용어 정비 등

다. 관련법령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정희)

○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, 포항시도 ‘아동친화도시’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‘아동친화도시’ 조성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해 구성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검토 결과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포항시 실정에 맞는 아동친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